

99.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7. 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축지도담당 안기석)

가. 제안이유

○ 99.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 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나. 주요골자

○ 98.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

- 자금명 :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
- 지급보증금액 : 624백만원
-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역곡동 신재옥 외 101명 총 102가구(원미구 41가구, 소사구 34가구, 오정구 27가구)
- 융자금지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 남지점 등)
- 상환방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- 이 율 : 연리 3%

• 지급보증기간 : 2년 간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건수는?	○ 전세자금 건수는 560건임
○ 현재까지 전세자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?	○ 99년도 융자금상환에 대한 보증채무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99.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

의안번호	제175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99.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주요골자

○ 98.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

가. 자금명 :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

나. 지급 보증 금액 : 624백만원

다.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역곡동 신재옥 외 101명

총102가구(원미구 41가구, 소사구 34가구, 오정구 27가구)

라. 융자금지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남지점 등)

마. 상환방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
바. 이율 : 연리 3%

사. 지급보증기간 : 2년 간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□ 제안본문

제목 : 99.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

가. 목 적

○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 안전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함.

나. 지원방법

○ 융자지원규모 : 624백만원(99. 부천시 배정액)

(※ 재원 :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)

○ 융자대상

-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

-전세금 2000만원 이하(융자금 포함 2750만원 이하)인 전 세입자

○ 가구당 지원액 : 750만원 한도 내

○ 대출금리 : 연리 3%(본인 부담)

○ 상환조건 : - 2년 이내 일상상환(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)
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

○ 구별자금 배분액

구 분	배 정 액
계	624,000천원
원 미 구	247,500천원
소 사 구	219,000천원
오 정 구	157,500천원

다. 용자실시 방법

○ 용자업무 취급기관 : 주택은행 부천지점 외 9개 점포

○ 시행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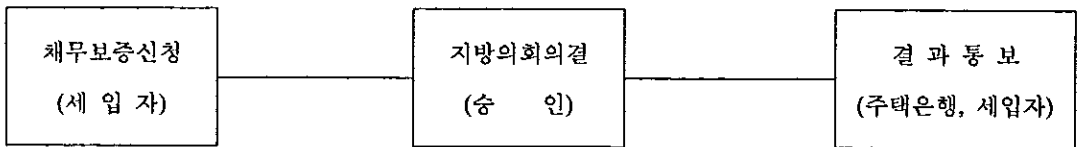
- 신청접수 : 99. 2. 3~3. 25(각 동)
- 개별실태조사 : 99. 2. 3~3. 25(각 동)
-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: 99. 4. 2일까지(각 구청)
- 지방의회 의결 : 보증채무동의행위
- 대상자 통보 : 의회 의결 후
- 용자실시 : 99. 6월~12. 30

○ 용자계약 체결

- 계약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- 보증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용자신청
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라. 채무이행 보증절차

○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



○ 채무보증내용

- 전세자금 용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서
-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원 확인한 후
-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
- 부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

마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용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,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
-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.

채 무 보 증 신 청 서

제 호

부 천 시 장 귀 하

주 채 무 자 ㉠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

2. 내 용

가. 채 권 자 : 주택은행장

나. 채 무 액 : 624백만원

다. 이 자 율 : 연 3%

라. 상환기간 : 자 1999. 6. 지 2001. 12. 2년 간(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)

마. 상환계획 : 2년 이내 일시상환

3. 사 유

가. 주채무 발생 :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를 돕기 위한

나. 시보증이 필요한 사유 :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

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

4. 준수사항

가.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에서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,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마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채 무 보 증 동 의 통 지 서

귀 하

부 천 시 장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

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1. 주채무자 :
2. 채무건명 :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
3. 채 무 액 : 750백만원
4. 이 자 율 : 연 3%
5. 상환기간 : 자 1999. 6 지 2001. 12(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)
6. 상환재원 : 신청자부담 - 원금, 상환이자의 3%
7. 융자재원 : 624백만원
8. 관계기관 : 한국주택은행
9. 채무보증근거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,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,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시정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마. 채권자는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바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사. 융자지급기간은 99. 12. 30일까지임을 유념하시어 동기간 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.